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2D INFANTRY DIVISION
ROK-US COMBINED DIVISION
BLDG P6500 UNIT #15041
APO AP 96271-5041

EAID-CG

MAR 24 2022

수 신: 미 2 사단/연합사단 소속 전 구성원

제 목: 지휘 지침서 #12: 사내 불법 차별 및 괴롭힘 근절 및 예방법

1. 참조:

- a. 육군 규정 690-12 (균등고용기회 및 다양성)
- b. 육군 규정 690-600 (균등고용기회차별 민원 절차)
- c. 미 8 군 지휘 지침서 #10, 사내 불법 차별 및 괴롭힘 근절 및 예방법,
2020 년 10 월 3 일.
- d. DoDI 1020.04 (미군무원 직원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 e. 주한미군 규정 690-1 (규정 및 절차 – 한국인 군무원)

2. 목적. 사내 불법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절차 설립에
목적을 둠.

3. 배경.

a. 불법 괴롭힘의 유형은 특정적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불순한 행동, 위협, 조롱, 모욕,
공격적 견해 및 농담, 혹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꼭 성적 본성에 관한 의미를 담지
않더라도 포함함), 출신국가, 나이 (40 이상), 장애, 유전적 정보, 또는 보복에 기반한 모든
물리적 행위를 포함함:

(1) 위 행위에 대한 직원의 명백한 혹은 암묵적 수용 여부를 떠나 이는 실질적
직원 고용 및 관리 관련 조치에 근거를 마련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가

(2) 충분히 가혹하거나 만연히 해당 직원의 고용 조건 혹은 복지에 영향을 줌으로서 적대적 및 학대적 사내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런 괴롭힘의 유형 중 승진 거부와 같은 개별적 인사 조치는 해당하지 않음.

b. 연방 차별 금지 법 아래, 본 기관은 해고 혹은 진급 미달과 같은 책임관리자의 실질적 (부당적) 고용 인사 조치를 초래하는 불법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모든 관련 법적 책임이 있음.

c. 본 기관은 비관리직 직원 혹은 (독립적 계약직 및 관할 내 이용 고객과 같은) 비직원 인원들에 의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관련 법적 책임이 있음. 이는 주변에 발생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혹은 인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였을 경우까지도 책임 통제 범위에 포함함.

4. 논의.

a. 미 2 보병사단은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지향성, 종교, 출신국가, 나이, 장애, 보복성, 혼인여부, 정치적 성향, 자녀여부,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사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은 절대 용납 및 허용할 수 없는 행위에 포함됨.

b. 본인이 괴롭힘 행위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 해당 행위는 부정함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즉각적으로 관리 계통을 통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

c. 모든 군 및 민간인 책임관리장과 관리자는 보고된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시정 조치가 적시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 가혹하거나 만연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경우, 관리직 공식관계자는 기관 소속 법무팀/노사 상담관 그리고 기회균등관 혹은 노사관리 (LMER) 담당관과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적절한 시정 조치 권장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야 함. 고발 및 신고를 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그 어떠한 보복행위도 용납되지 않음.

d. 익명 제보로 접수된 괴롭힘 혐의에 대해, 특히 제보자의 신원이 미상이라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추가 조사가 가능한 경우 적절한 대응 절차 및 수속을 밟게 될 것임.
추가적으로, 괴롭힘 혐의가 접수된 후 제보자의 신원이 식별되거나 제보자가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익명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음. 이는 제보자의
개인신분 보장에 의한 목적에 의거함.

e. 괴롭힘 없는 업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군인 및
군무원을 불문하고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함. 그 어떤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도
예방하겠다는 미 2 사단 소속 구성원들의 헌신과 약속은 최고조의 전문성과 서로
상호간의 예의와 존중이 갖춰진 근무환경이 보장되며 이는 곧 미 2 사단의 발전과
우수성에 기여하는 것임. 따라서 지휘부는 본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음..

5. 본 지침서는 미 8 군 균등 고용 기회 (EEO) 부서에서 발의됨. 담당관 연락처는 DSN
(315) 755-0320/21 임.



DAVID A. LESPERANCE
Major General, USA
Commanding